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신규 대비표

2016. 7. 26.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신규대비표〉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I. 주주	1. 주주의 권리	원칙	1.1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 <b>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b>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1.1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주석	<del>기업의 소유자로서</del>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주주는 <b>기업의 소유자로서</b> 기업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b>시의적절하게</b>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원칙	1.2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1.2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석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b>기업의 구조조정을 결정함에 있어</b> 반대주주 및 소수주주의 실질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b>할 것이다.</b></p> <p>현행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기업의 존립 및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의 변경</li> <li>· 합병,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li> <li>· 해산</li> <li>· 자본의 감소</li>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li> <li>· <b>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 등</b></li> </ul> <p>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b>기업의 사업 및 소유구조 변동에 있어</b> 반대주주 및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b>한다.</b></p> <p>현행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b>대 규모 자산 양수도 등</b> 기업의 존립 및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원칙	<p>1.3 <b>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b>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p>	<p>1.3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b>충분한 기간 전에</b>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p>
		주식	<p><b>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이 주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과 제공방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전자통신 매체의 발달로 앞으로는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b></p>	<p><b>기업은</b>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b>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p> <p>그리고 주주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소액주주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는</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로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그리고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기 용이하도록 개최일시와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주총회는 소액주주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것이 바람직하다.</p> <p>기업은 최대한 많은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
		원칙	<p>14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4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p>
		주석	<p>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의안결의 이전에 충분한 질의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p>	<p>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의안결의 전에 충분한 질의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p>
		원칙	<p>15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p>	<p>15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p>
		주석	<p>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와 관련하여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는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서면투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다.</p> <p>기업은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과 외국인주주 및 소액주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주주총회 안전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자통신을</p>	<p>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와 관련하여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업은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인 의결권 대리행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안전을 최대한 빨리 공시하여 주주가 안전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주주가 <u>서면투표에</u>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u>이를 통하여 서면투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주주가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p>	<p>둘째는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u>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u>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다. 기업은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과 외국인주주 및 소액주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주주총회 안전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인터넷 <u>홈페이지</u> 등에 게시함으로써 주주가 서면투표 <u>또는 전자투표</u>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u>서면투표, 전자투표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아울러 기업은 주주총회의 안전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를 공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u></p>
		원칙	<p>2.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2.1(좌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식	<p>현행 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p> <p>그러나 상법 및 일부 법령은 예외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p>	<p>현행 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p> <p>그러나 상법 및 일부 법령은 예외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대기업의 투자신탁업을 포함한 금융업 진출 확대의 금융기관의 주식 및 회사채 투자규모의 증대에 따라 기업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결권 제한도 크 타당성이 검증되면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종류주식이 도입되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 등 다양한 유형의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다. 기업은 종류주식의 발행 등 자본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은 종류주주총회 등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칙	2.2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좌동)
		주석	주주는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항 이외에도 <u>주식의</u>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은 <u>가급적 많은</u> 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여야 한다.	주주는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항 이외에도 <u>기업</u>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은 <u>관련</u> 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여야 한다.
		원칙	2.3 주주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3 주주는 <u>지배주주 등</u>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주석	경영진 또는 주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거래는 <u>경영진의 충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u> 이를 위해 기업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공시하여야 한다.	경영진 또는 주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내부거래는 <u>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를 의미하고, 자기거래는 경영진 또는 주주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u>  <u>기업은</u>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그 거래내역을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3. 주주의 책임	원칙	3.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1 (좌동)
		주석	<del>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의 자유다. 그러나</del> 기업의 경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도 기업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주는 기업의 경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칙	3.2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2 (좌동)
		주석	지배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를 포함한다.  기업경영의 책임은 해당 기업의 이사 및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이사의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외에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del>지배주주의 기업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del> 부당한 경영간여는 이사의 경영책임 강화나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억제될 수 있다.	지배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 등 당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를 포함한다.  기업경영의 책임은 해당 기업의 이사 및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가 이사의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기업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여는 이사의 책임 강화나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억제될 수 있다. 그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그러나 지배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b>이외에</b>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b>는</b>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회사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b>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b>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b>에도</b>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회사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II. 이사회	1. 이사의 기능	원칙	<p>1.1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p> <p>〈주요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li> <li>·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li> <li>·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수준의 결의</li> </ul> <p>〈세부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li> <li>·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li> <li>·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li> <li>·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li> <li>· 기업인수합병 관련 주요 사항의 결의</li> <li>·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li> <li>·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소 감독</li> <li>·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li> <li>· 위험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li> <li>· 정보공시의 감독</li> <li>·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li> </ul>	1.1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u>현재 이사회는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u> 따라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u>독선적인</u> 경영을 <u>감시</u>·견제하고,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과 임무를 <u>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자신이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자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u></p>	<p>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주요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li> <li>·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li> <li>·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수준의 결의</li> <li>· <u>기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u></li> </ul> <p>〈세부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li> <li>·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li> <li>·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li> <li>·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li> <li>·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li> <li>· 기업인수합병 관련 주요 사항의 결의</li> <li>·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li> <li>·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li> <li>·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li> <li>· 위험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li> <li>· 정보공시의 감독</li> <li>·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li> </ul> <p><u>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이다.</u> 따라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u>독단적인</u> 경영을 <u>감독</u>·견제하고, 기업의</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부실화를 예방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과 임무를 <u>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u>
		원칙	1.2 이사회는 <u>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부의 위원회에</u>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이사회는 <u>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u>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u>법령·정관</u> 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석	<p><u>현대의 기업, 특히 대규모기업은 경영이 전문화되고 기능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면서 이사회의 전체 이사가 수시로 모여 기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더구나 사외이사수가 대폭 증가되면서 이사회의 빈번한 개최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u></p> <p><u>따라서</u>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대표이사 또는 이사회</u>의 <u>분야별 위원회에</u>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u>이사회는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만 하고</u>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u>위원회는</u>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u>업무수행의 효율성과</u>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p>	<p>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u>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u>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제외한</u>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들로 <u>위원회를</u>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u>업무수행의 독립성과</u>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원칙	(신규)	1.3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주석	(신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당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퇴임시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최고경영자 승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원칙	(신규)	1.4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주석	(신규)	리스크 관리는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여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내 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전담인력의 배치와 책임자의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원칙	2.1 <u>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절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한다.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	2.1 <u>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u>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모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일률적인 이사의 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기업의 규모, 영업의 환경 및 특성 등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u>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정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대규모 공개기업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을 상정한 것이다.</u></p>	<p>이사회 규모는 기업 규모, 영업의 환경 및 특성 등에 적합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정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p>
		원칙	<p>2.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u>최소한 2인으로 함으로써</u>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u>특히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권고한다. 단, 개인 등 또는 법인이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피자배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한 권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인이란 개인 등이 50%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만을 의미한다.</u></p>	<p>2.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u>특히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u></p>
		주식	<p>사외이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p> <p>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규모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	<p>사외이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p> <p>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규모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del>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권고기 적용되지 않는 피지배 공개기업은 자신이 피지배 공개기업이라는 점과 피지배 공개기업으로 분류되는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서 법인을 개인등이 50%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정하여 기업집단 내의 피지배 공개기업 등을 제외한 이유는 이러한 기업이 법인출자에 의해 지배되더라도 지배되지 않는 기타 공개기업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지배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del></p>	<p><u>대규모 공개기업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을 의미한다.</u></p>
		원칙	(신규)	<p><u>2.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u></p>
		주식	(신규)	<p><u>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u></li> <li>· <u>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u></li> <li>· <u>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u></li> <li>· <u>과도한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u></li> <li>· <u>그 밖에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u></li> </ul>
		원칙	<p><u>3.3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u></p>	<p><u>2.4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u></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이사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b>인사</b>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b>인사란 기업경영에 대한 비전 및 전략적 시각, 냉철하고 건전한 경영판단력, 조직운영 및 감독능력, 법적재무적 지식, 당해 기업에 적합한 경험</b>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한편,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에게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현저한 직무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이사가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를 <b>존중해 주어야</b> 한다.</p>	<p>이사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b>자</b>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b>자란 당해 기업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b>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한편,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현저한 직무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이사가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가 존중되어야 한다.</p>
		원칙	(신규)	<b>2.5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b>
		주식	(신규)	<b>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경험·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b>
		원칙	2.3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주식	<p>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직책의 분리 선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임사외이사</p>	(좌동)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lead outside director)를 선임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원칙	(신규)	<u>2.7 기업은 필요에 따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u>
		주석	(신규)	<u>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집행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집행임원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u>  <u>집행임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이사회는 감독기능에 보다 충실하며 이사회는 집행임원에게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u>
		원칙	3.1 이사회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u>운영하도록</u>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사회후보 <u>선임</u> 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8 이사회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u>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u> 를 <u>운영할 것</u> 을 권고한다. <u>동</u> 위원회는 이사회후보 <u>추천과정</u> 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주석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지배주주 혹은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u>이사선임절차</u> 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지배주주 혹은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u>이사회후보 추천절차</u> 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이를 위하여 <u>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u> 먼저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u>이사추천위원회</u> 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 포함된 <u>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u> 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원칙	3.2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하며, <u>그 채택여부는 공시되어야 한다.</u>	2.9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주석	이사 후보의 선정과 이사 선임과정에 <u>다수의 일반주주의</u>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 후보의 선정과 선임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도 그 자격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u>그 실질적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u>  <u>따라서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사선임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기업이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에 <u>소수주주의</u>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후보의 선정과 <u>이사의</u> 선임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u>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u>
		원칙	3.4 기업은 <u>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일 전에 공시함으로써</u>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u>정보를 가지고</u>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0 기업은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u>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u> 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석	<u>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사후보에 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u> 그러므로 이사후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자격이 있	<u>기업은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 또한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는 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는 이사의 선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시되어야 한다.</p> <p>공시방법은 기업 정보의 수사정보 공시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주주가 해당 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주총소집 통지시에 이사회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p> <p>기업이 이사회후보를 수사정보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시할 경우 일반주주에게 이사회후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 주주총회일 2주일전까지는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사를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통지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 주주총회 전에 추천을 받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3. 사외이사	원칙	4.1 사외이사는 <b>기업</b>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1 사외이사는 <b>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b> ,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주석	<p>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자, <b>이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어려운 중대한 관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li> <li>-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및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업무 및 관계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li> <li>-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li> <li>- 위의 선임제외 대상자의 특수관계인</li> </ul>	<p>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b>자</b>를 말한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시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원칙	4.2 <u>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은 선임될 사외이사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공시해야 한다.</u>	3.2 기업은 <u>사외이사 후보가</u>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u>확인</u> 하고 공시해야 한다. <u>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u>
		주석	<p><del>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del></p> <p>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기업·경영진·지배주주와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더라도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시 기업·경영진·지배주주와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더라도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원칙	(신규)	3.3 <u>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u>
		주석	(신규)	<u>다수의 기업에서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외이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u>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라서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영위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직 등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p>
		원칙	<p>4.3 기업은 사외이사<del>가</del> 기업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중요한 기밀사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며, 경영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3.4 기업은 사외이사<del>의</del>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주석	<p>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u>사전에</u>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는 기업의 <u>어느 누구에게라도</u> 정보제공을 <u>요구</u>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u>기업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그 유출을 억제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정보</u></p>	<p>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u>충분히</u> 검토할 수 있도록 <u>사전에</u>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는 기업의 <u>업무담당자에게</u> 정보제공을 <u>요청</u>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u>사외이사는 기업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u>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고경영자나 경영진은 <u>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또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요청을 <u>용이하게 하기</u> 위하여 기업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하여 기업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원칙	4.4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u>사외이사는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 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3.5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주석	<p>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제공된 자료를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사외이사는 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p> <p>또한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여 경영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좌동)
		원칙	4.5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3.6 (좌동)
		주석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법률고문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법률고문·경영자보상 관련 컨설턴트 등과 같은 외부전문가의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어야 한다. 이 때 <u>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라면 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p>	<p>지원 또는 지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u>소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u></p>
		원칙	<p>4.6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별도의 회의가 이사회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은 경영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3.7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p>
		주석	<p>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 토양에 뿌리를 내려 본래의 도입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p> <p>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 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회의를 주관하게 하거나 사외이사가 위임하는 중요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u>사외이사들은</u>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할 선임사외이사의 성명과 선임 방법을 <u>공시</u>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p>	<p>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 토양에 뿌리를 내려 본래의 도입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p> <p>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 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회의를 주관하게 하거나 사외이사가 위임하는 중요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할 선임사외이사의 성명과 선임 방법을 <u>공개</u>하여야 한다.</p> <p><u>기업은</u>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4 이사회 의 운영	원칙	원칙	5.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정기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4.1 (좌동)
		주석	<p>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자를 정하여 사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는 회의 때마다 함을 요(要)하지 않고,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 일시를 정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전원동의로 다음 이사회 일시를 정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어놓고 소집통지 없이 회의를 할 수 있다.</p> <p>이사의 직무를 전문(專業)으로 하지 않는 사외이사가 다수인 경우라면, 중요한 사항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일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이사회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p> <p>각 기업마다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사회 실질적 역할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빈도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직접 의결하여야 하고 경영감독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사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p>	<p>기업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정기이사회 개최빈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p> <p>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기이사회를 규정하거나 직전 이사회에서 차기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특히 사외이사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일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이사회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p>
		원칙	5.2 <u>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u>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2 <u>원활한 이사회 운영을</u>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이사회는 다수의 <u>사내사외이사들로</u>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u>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운영과정 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고</u>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u>각 기업이 이사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u>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사회운영규정에는 <u>이사회 권한, 구성,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사회가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u></p>	<p>이사회는 다수의 <u>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u>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u>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u>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u>이사회 권한, 구성,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u>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원칙	<p>5.3 이사회는 <u>회의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내용을</u> 녹취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u>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u> 가급적 상세하고 <u>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자료는</u> 유지·보존되어야 한다.</p>	<p>4.3 이사회는 <u>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u>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u>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u></p>
		주식	<p>이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토의 및 결의된 내용과 이사 개인별 발언 및 찬반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p> <p><u>따라서 기업은 의사록과는 별도로 보다 상세하게 이사회 과정을</u>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녹취자료는 이사회 회의 때마다 작성되어야 하고, 중요한 <u>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이 발언자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야</u>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는 <u>이사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u>에 이사에 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u>유지·보존되어야 한다.</u></p>	<p>이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추궁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토의 및 결의된 내용과 이사 개인별 발언 및 찬반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p> <p><u>따라서 기업은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u>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u>이사별로 상세하고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사는 해당 의</u>사록에 <u>직접 서명하여야 한다.</u></p>
		원칙	<p>5.4 <u>이사회 활동 중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에 관한 공시내용을</u>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확대되어야 할 공시내용은 <u>개별 이사의 이사회</u>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이다.</p>	<p>4.4 개별 이사의 <u>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u>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5. 이사회내 위원회	주석	주석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의 공개는 이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개 자료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u>이사회 활동 내역에 관한 공개는</u> 이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성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의결에 임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의 공개는 이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개 자료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u>사외이사 뿐만 아니라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내이사 등에 대한 활동 내역의 공개는</u> 이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성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의결에 임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원칙	(신규)	4.5 <u>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
		주석	(신규)	<u>이사회는 모든 이사에게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 수단(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u>
	원칙	원칙	6.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5.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u>적정수의 인원으로 구성된</u>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u>특히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u>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원칙	6.2 <u>이사회 내부에</u> 감사위원회, 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u>특히, 대규모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이들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2항에서 정한 대규모 퍼지배 공개기업은 이 규정을 모두 적용받지는 않으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u>	
		주석	(6.1 주석) <u>전체 이사가 수시로 모여 기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특히 사외이사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사회를 빈번하게 소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사회의 규모나 회의 시간상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원만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u>	<u>시간적·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체 이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u>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분야에 <u>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적합한</u> 이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업무수행의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u>니다.</u></p> <p>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해 분야에 <u>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들을 배치하여 그 위원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는</u>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u>있을 것이다.</u></p> <p>(6.2 주식)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u>적법</u>,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p> <p>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따라서 추천위원회는 현행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대체한다. 또한 추천위원회는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따르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u></p> <p>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경영진의 보상수준을 결정한다.</p>	<p>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u>있다.</u></p> <p>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u>적법하고</u>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p> <p>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추천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내 이사를 추천하고, 또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발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사정에 정통한 사내이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러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면 추천위원회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u></p> <p>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경영진의 보상수준을 결정한다.</p> <p><u>각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주총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u></p>
		원칙	<p>6.3 <u>추천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그리고</u> 보상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p>	<p>5.2 <u>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와</u>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u>추천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내이사를 추천하고, 또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발굴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사정에 정통한 사내이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러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면 추천위원회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성의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의장은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u></p> <p><del>보상위원회의 경우 동 위원회가</del>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del>被평가자인</del>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따라서 보상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u>할 것이다.</u></p> <p>사외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에 중복소속이 가능하나 단수의 위원회 <u>소속을</u> 권고한다.</p>	<p><u>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u></p> <p>보상위원회가 경영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따라서 보상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u>한다.</u></p> <p>사외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복수의 위원회에 중복소속이 가능하나 단수의 위원회 <u>에 속하는 것을</u> 권고한다.</p>
		원칙	<p>6.4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u>하고,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u></p>	<p>5.3 <u>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u>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주식	<p><del>이사회가 위원회를 두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법령상 이사회 자신이 처리하도록 요구되는 사항에 한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업무는 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한다.</del></p>	<p>이사회가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사항 중에서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 그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u>이처럼</u> 이사회가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사항 중에서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 그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u>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원회의 취지</u></li> <li>· <u>위원회의 목표와 책임</u></li> <li>· <u>위원회의 연간 성과평가</u></li> <li>· <u>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면, 위원회의 구조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u></li> </ul>	<p>여야 한다.</p> <p><u>이사회내 위원회는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원회의 설치목적</u></li> <li>· <u>위원회의 권한과 책임</u></li> <li>· <u>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u></li> <li>· <u>위원회의 연간 활동 및 성과평가</u></li> <li>· <u>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면</u></li> <li>· <u>위원회의 구조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u></li> </ul>
6. 이사의 의무	원칙	7.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u>기업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u>	6.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u>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u>	
	주석	<p><u>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u>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업의 <u>각종 자료를 주의를 기울여</u> 검토하고,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여야 <u>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u></p> <p><u>이사는 경영진에게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u> 외부감사인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다. <u>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신이</u></p>	<p><u>기업과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는</u>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업의 <u>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u> 검토하고,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여야 <u>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는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이</u>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u>주의를 다하여</u> 살펴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나아가 기업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u>항시</u> 살펴야 한다.	
		원칙	7.2 이사는 기업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권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6.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주석	<p><del>이사의 충실의무는</del>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u>그리고 어떤 기회가 기업과 이사 개인에게 동시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일 때에</u> 특히 작용한다. 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의 사이에 당사자로서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거래를 하려고 계획할 때에, 해당 이사는 그 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u>이 경우</u> 이사는 <u>기업의</u>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u>그리고 이익이 충돌되는 거래나 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u> 이사회에 <u>그 이해관계</u>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기업의 이익과 <u>이사</u>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이사는 <u>기업과 주주</u>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p> <p><u>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u> 이사회에 <u>그 내용</u>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u>해당사안은</u> 이해관계가 없는 <u>이사들의</u>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원칙	7.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u>지득한</u>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u>이용하여서는</u> 안 된다.	6.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u>알게 된</u>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u>이용해서는</u> 안 된다.
		주석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u>준수하여야 한다.</u> <u>이사는 자신이 지득한 기업비밀을</u>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의 기업비밀 이용행위는 그것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의 기업비밀 이용행위는 그것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7. 이사의 책임	원칙	원칙	8.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1 (좌동)
		주석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u>그 임무를</u>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된다. 이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이사의 적절한 직무수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도 없다. <u>이사의 적절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유효한 수단은 이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u>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u>주 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u>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된다. 이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이사의 적절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묻는 것이 <u>가장 유효한 수단이다.</u>
		원칙	8.2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7.2 (좌동)
	주석	기업의 경영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영의 적정성을 사후적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과실유무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이며 적절하지도 않다. <u>이사가 그의 능력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한 것은 존중되어야 이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다.</u>  <u>미국은 이사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u>	기업의 경영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영의 적정성을 사후적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과실유무를 가려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이며 적절하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이사가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여야 하고, 경영판단사항에 대하여 이사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판단을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judgement rule)을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이사가 성실하게 주의를 다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여 그들에게 기업가적 모험심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둘째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경영에 비전문가인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p> <p>일반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이사가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을 하여야 하고, 경영판단사항에 대하여 이사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u>결정한 것이라야 하고</u>, 이사는 당해 경영판단이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p> <p>이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능한 경영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여건변화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은 이사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과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p>	<p>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u>결정하여야</u> 하고, 이사는 당해 경영판단이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p>
		원칙	<p>8.3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u>인사</u>를 이사로 <u>유치</u>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7.3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u>자</u>를 이사로 <u>영입</u>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석	<p>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거액화되고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자력(資力)이 없으면 책임추궁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u>이사 보수의 일부로</u>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이나 제3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그러나 기업이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u>책임</u>을 전보(填補)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기업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u>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u> 따라서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이사의 손해를 전보(填補)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p>	<p>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거액화되고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자력(資力)이 없으면 책임추궁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이나 제3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그러나 기업이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u>손해배상액</u>을 전보(填補)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기업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u>것은 도덕성 해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u> 따라서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u></p>
		원칙	<p>8.4 <u>이사들은</u> 주기적으로 <u>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사내외교육에</u> 임하여야 한다. 특히 <u>새로이 이사로 선임된 자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중립적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u>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p>	<p>7.4 <u>이사는</u> 주기적으로 <u>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에</u> 임하여야 한다. 특히 <u>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u>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p>
		주석	<p>이사의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사의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들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u>제공</u>하여야 한다. 특히, <u>새로이</u> 선임된 이사는 <u>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u>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p>	<p>이사는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u>투입</u>하여야 한다. 특히 <u>신규</u> 선임된 이사는 <u>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u>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u>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u>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8. 평가 및 보상		원칙	9.4 이사회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활동 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주석	<p>이사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부위원회가 이사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는 주주총회나 경영자 인력시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인력시장에서의 평가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p> <p>따라서 이사회의 활동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판단을 돕고 경영자 인력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작성되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p>	(삭제)
		원칙	9.2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그 산출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주석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과 행사조건은 경영성과에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원칙	9.3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b>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b>	8.1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u>사외이사가 기여한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u>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그들이 <u>업무수행에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u>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 <p><u>또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외이사 보수의 일정부분은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u></p> <p><u>사외이사의 활동내용 및 평가결과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판단을 돕고 경영지인력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p>	<p>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u>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u>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그들이 <u>직무수행에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u>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p>
		원칙	(신규)	<p><u>8.2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주요사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공시되어야 한다.</u></p>
		주식	(신규)	<p><u>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기업은 임원의 등기·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u></p> <p><u>더불어 기업은 보수 산정기준, 보수 내역, 실 수령 보수, 주식매수 선택권,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보수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u></p> <p>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영진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과 행사조건은 경영성과에 연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	9.1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보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8.3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주석	<p>경영진의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경영진의 활동내용은 기업의 실적 및 주가상승률, 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여부, 동종 타 기업의 보상내용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심의 또는 재선임 결정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이용된다.</p> <p>경영진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인 만큼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사의 개인별 보수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보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위원회는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이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좌동)
Ⅲ.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원칙	1.1 공개기업,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1.1 대규모 공개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감사위원회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한층 복잡해진 대규모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개기업,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과 같이 기업경영의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은 기존의 상법상의 감사를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병존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감사권의 상충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p>	<p>경영활동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현대 기업에서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원칙	<p>1.2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할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기업은 감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u></p>	<p>1.2 <u>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u>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위원 중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p>
		주식	<p>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의 원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 이상으로 <u>구성하여야</u> 한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감사위원회가 적절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감사보다 약화되지 않도록</p>	<p>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의 원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 이상으로 <u>구성되어야</u> 한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감사위원회가 적절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감사보다 약화되지 않도록</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록 하여야 한다.</p> <p>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추는 필요는 없으나 회계기준,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p>록 하여야 한다.</p> <p>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추는 필요는 없으나 회계기준,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p>
		원칙	<p>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b>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b> 수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li> <li>·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li> <li>·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li> <li>·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li> <li>·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li> <li>·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li> <li>·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li> <li>·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li> <li>·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와의 사후보고</li> <li>·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li> <li>·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li> </ul>	<p>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b>감사업무를 충실히</b> 수행하여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p>	
		주식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del>부실한 재무보고는 국가 경제시스템의 기초를 해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함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del></p> <p>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b>및</b>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li> <li>-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li> <li>-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li> <li>-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li> <li>-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li> <li>-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li> <li>-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li> <li>-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li> <li>-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li> <l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li> <li>-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li> <li>-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li> <li>-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li> </ul>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스스로 모든 업무집행과정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그 산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또는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독립성은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선결요소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b>회사</b>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b>회사</b>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p> <p>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p> <p><u>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u>, 감사위원회 또는 감</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b>정기적으로</b>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b>지체없이</b>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지적인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원칙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4 (좌동)
		주석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b>또한 감사만 있는 기업도</b>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b>감사만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b>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원칙	1.5 감사위원회는 <b>회의</b> 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5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b>회의</b> 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분기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보고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u>가져야</u> 한다.</p> <p>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어야 한다. <u>감사위원회의 회의 안건에 경영진의 업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u> 당해 회의에 경영진은 참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및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u>정보수집과</u>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분기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보고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회의를 <u>개최하여야</u> 한다.</p> <p>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어야 한다. <u>다만 경영진의 업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의 경우에는</u> 경영진은 참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및 외부감사인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u>정보를 수집하고</u>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원칙	1.6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좌동)
		주식	회의록과 감사록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감사위원회의</u> 회의록과 감사록은 <u>이사회 회의록과 마찬가지로</u>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1.7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7 (좌동)
		주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좌동)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그 책임을 묻도록 내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 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 원회운영규정 또는 기타 관련 내규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위 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내용·비용·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원칙	<p>1.8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 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대표 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p>	1.8 (좌동)
		주석	<p>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 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관련 법령 및 감사위 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b>감사위원회 의무의 이행 여부</b> 및 기타 주요 활동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 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관련 법령 및 감사위 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b>감사위원회의 의무 이행 여부</b> 및 기타 주요 활동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원칙	<p>1.9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p>	1.9 (좌동)
		주석	<p>감사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외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b>아니</b> 된다. 이는 다</p>	<p>감사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외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b>안</b> 된다. 이는 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른 보수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제공할 미래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연금 또는 이연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른 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현금 이외에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도 가능하다.	른 보수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제공할 미래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연금 또는 이연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칙	2.1 외부감사인인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실질적 및 외견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1 외부감사인인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 감사인	주식	<p><u>외부감사와 관련된 법령</u>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감사인 스스로가 직업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의해 감사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실질적 또는 외견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p> <p>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을 위하여 <del>기장(記帳)대리업무를 하거나</del>, 경영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잦은 교체 위협에 대한 보호 장치로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자는 <u>4년 이상</u> 같은 회사를 감사하지 않아야 한다.</p>	<p><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감사인 스스로가 직업윤리에 입각한 판단에 의해 감사대상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실질적 또는 외견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p> <p>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을 위하여 <u>회계감사 외에</u> 경영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한편 외부감사인의 잦은 교체 위협에 대한 보호 장치로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외부감사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책임자는 <u>3년을 초과하여</u> 같은 회사를 감사하지 않아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원칙	2.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2.2 (좌동)
		주석	주주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원칙	2.3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감사대상기업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좌동)
		주석	외부감사인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기업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b>허위의 기재</b> 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업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기업정보가 감사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해 이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업무를 게을리하여 기업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b>허위로 기재함</b> 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업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기업정보가 감사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해 이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원칙	2.4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4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 <b>행위</b>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의 <b>부정이나</b> 위법행위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b>부정</b>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의 <b>부정행위나</b> 위법행위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b>부</b>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u>나</u>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p> <p>특히 회계감사인이 연결 <u>및 결합</u> 재무제표 감사 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간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에 이루어지는 <u>부정행위</u></p> <p><u>나</u>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감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의심이 가는 <u>부정</u> 또는 위법행위는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u>정행위나</u>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p> <p>특히 회계감사인이 연결 재무제표 감사 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간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에 이루어지는 <u>부정행위나</u>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감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의심이 가는 <u>부정행위</u> 또는 위법행위는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원칙	2.5 외부감사인은 <u>외부감사와 관련된 법령에서</u>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2.5 외부감사인은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u>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주석	<p>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그 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부실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기피하거나 책임회피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p> <p>그러나 <u>외부감사인의</u>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u>제고할 수 있다는</u>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보수가 이러한 추가적 책임부담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존속가능성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	<p>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그 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부실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기피하거나 책임회피를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사의견을 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p> <p>그러나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u>제고하는</u>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보수가 이러한 추가적 책임부담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존속가능성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
		원칙	2.6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u>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	2.6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석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중대한 회계정책, 경영진의 판단이 미친 회계처리와 회계추정, 중대한 감사수정사항,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되는 사항 그리고 외부감사 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중대한 회계정책, 경영진의 판단이 미친 회계처리와 회계추정, 중대한 감사수정사항,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되는 사항 그리고 외부감사 수행시 애로사항 등을 들 수 있다.
IV.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원칙	1.5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기업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1.1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석	기업은 종업원, 채권자,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위(營爲)에 이들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기업은 종업원, 채권자,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위(營爲)에 이들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칙	1.3 기업은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1.2 (좌동)
		주석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영속(永續)하는 데 있어 소비자나 지역사회도 이해관계자로서의 중요성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영속(永續)하는 데 있어 소비자나 지역사회도 이해관계자로서의 중요성이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증대되고 있다.</p> <p>특히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del>과거와 달리</del>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의 <b>장기</b>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적절한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증대되고 있다.</p> <p>특히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보호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의 <b>장기적</b> 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적절한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원칙	<p>1.2 기업은 <b>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b> 노력하여야 한다.</p>	<p>1.3 기업은 <b>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b> 노력하여야 한다.</p>
		주석	<p><u>현재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업가치 창출의 직접적인 기여자인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다.</u></p> <p><u>기업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u>고용관계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하며,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적절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u></p> <p><u>기업의 근로조건은 국내의 법과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을 상회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국내법 및 관행과 일치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국내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같은 국제노동기준에 정의된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u></p> <p><u>근로조건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보건 및 안전, 출산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최저 수준 이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u></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원칙	(신규)	1.4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주석	(신규)	<p>공정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절감시키며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p> <p>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타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경쟁 기업 배제를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포함된다.</p> <p>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의 활동을 수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원칙	1.1 기업은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b>기업은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기타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	1.5 기업은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석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및 회사채 소유자 등 채권자는 투자자본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및 회사채 소유자 등 채권자는 투자자본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채권자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은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경우가 발생시에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el>또한 기업은 채권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선순위 채권의 발행이나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또는 즉시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del>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채권자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은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경우가 발생시에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하게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1.4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u>겸유(兼有)하는</u>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1.6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u>겸하는</u>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주석	특정인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u>겸유(兼有)하는</u> 경우 즉, 납품업자이면서 주주이거나, 종업원이면서 주주인 경우에도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반대로 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해관계자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도 안 된다.	특정인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지위를 <u>겸하는</u> 경우 즉, 납품업자이면서 주주이거나, 종업원이면서 주주인 경우에도 각각의 지위에 따른 권리는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반대로 주주로서의 지위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해관계자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도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원칙	2.1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1 (좌동)
		주석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u>기업의</u> 위험을 부담하므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무보증사채 및 신용대출의 일반화로 채권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기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므로 기업경영 감시에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  무보증사채 및 신용대출의 일반화로 채권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기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채권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경영 감시와 통제에 있어 채권자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그 역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del>기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시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한다.</del></p> <p><del>따라서 기업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외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기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적시에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del></p>	<p>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채권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경영 감시와 통제에 있어 채권자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그 역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의 협의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원칙	2.2 종업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2.2 <b>근로자</b> 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주석	<p>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경영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재정적·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하도록 하는 등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 <p>이와 같은 협의제도는 <b>종업원</b>들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기</p>	<p>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경영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재정적·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설명하도록 하는 등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p> <p>이와 같은 협의제도는 <b>근로자</b>들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기</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기업경영에 대한 <b>종업원</b>들의 참가를 바탕으로 건설적 의미의 <b>기업감시기능도</b>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법령에 의해 정해진 <b>종업원</b>의 <b>경영참가적 역할</b>은 권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b>종업원의 경영참가와 관련하여 종업원지주제도나 성과급제도와 같은 이익공유제도의 활용과 상여금 성과급의 일정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들이 自社株式의 보유를 통해 기업지분에 참가하는 것은 노사협력체제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간접적 경영감시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b></p>	<p>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기업경영에 대한 <b>근로자</b>들의 참가를 바탕으로 건설적 의미의 <b>기업감시 기능도</b>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법령에 의해 정해진 <b>근로자</b>의 <b>경영참가</b>는 권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원칙	2.3 기업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3 (좌동)
		주석	채권자는 투자위험 판단과 채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금전대차계약이나 사채모집위탁계약서 등에 채무자인 기업이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 채무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기업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계약에 명시된 채권자와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정 채권자 우대계약 등 기존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투자위험 판단과 채권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채권자는 금전대차계약이나 사채모집위탁계약서 등에 채무자인 기업이 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 채무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기업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계약에 명시된 채권자와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정 채권자 우대계약 등 기존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b>종업원</b>도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분기별 생산계획·실적, 인력계획 및 기업의 재정적 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b>근로자</b>도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기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분기별 생산계획·실적, 인력계획 및 기업의 재정적 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V.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1. 공시	원칙	2.1 기업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1.1 (좌동)
		주식	<p>기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시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한다.</p> <p>따라서 기업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외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기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적시에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좌동)
		원칙	<p>2.2 기업의 현황 및 재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경영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li> <li>·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li> <li>· 주주의 현황 및 주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li> <li>· 기업간의 상호주식보유현황 및 상호보증현황</li> <li>· 사업년도 중 자금조달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사항</li> </ul>	(삭제)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환경과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li> <li>· 임원, 직원 기타 기업의 업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li> <li>·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및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li> <li>·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신용평가기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에 관한 사항</li> <li>· 불성실공시 내역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li> </ul>	
		주석	<p>공개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기업의 사업개황, 재무상황, 경영성과 등의 기업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p>그러나 사업보고서의 내용 중 요약재무제표, 주석사항 등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p>	(삭제)
		원칙	2.3 공개기업은 <u>사업보고서에</u> 자신의 기업지배구조와 본 모범기준과의 차이 및 그 이유를 설명하고, <u>향후 변경할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u> 설명하여야 한다.	1.2 기업은 <u>사업보고서 또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u> 자신의 기업지배구조와 본 모범기준과의 차이 및 그 이유, <u>향후 변경 계획 등을</u> 설명하여야 한다.
		주석	<p>기업은 자신의 고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므로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이 모범기준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p> <p><del>중대한 차이라 함은 아래 열거하는 주요 공시사항에 있어서 현행 지배구조가 모범기준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del></p> <p><del>지배구조의 주요 공시대상으로는 1)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2)이사회</del></p>	<p>기업은 자신의 고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므로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이 모범기준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del>의 구성현황 사외이사의 현황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자료 3)이 사회의 위원회 구성 현황과 그 관한 및 활동 4)이사 및 이사회에의 활동상황 등이 있으며,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되어야 한다.</del></p>	
		원칙	<p>2.4 기업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이 다른 기업과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한다.</p>	(삭제)
		주석	<p>기업은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기타 손익관련정보(예: 월별손익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는 기업간의 지분을 기준 외에도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종속관계 여부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의해서도 지배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기업간의 지분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 중 대표기업은 기업집단 전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공시하여야 한다.</p>	(삭제)
		원칙	<p>2.5 기업은 정기공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b>지체 없이</b>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내용 외에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재무구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li> <li>·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li> </ul>	<p>1.3 기업은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b>적시에</b>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내용 외에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재산, 영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li> <li>· 채권 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li> <li>· 중요한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li> <li>·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li> <li>· 기업의 경영권 및 관리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li> <li>· 배당의 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li> <li>·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li> </ul>	
		주식	<p>기업은 <u>증권거래법</u>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u>공시의무사항</u> <u>뿐만</u> 아니라 공시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u>지체 없이</u> 상세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모든 공시정보의 이용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며,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상기 원칙에서 기업이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재무구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li> <li>·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li> <li>· 기업의 재산, 영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li> <li>· 채권, 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li> <li>· 중요한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li> <li>·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li> <li>· 기업의 경영권 및 관리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li> <li>· 배당의 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li> <li>·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li> </ul>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기업은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u>의무공시사항뿐만</u> 아니라 공시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u>적시에</u> 상세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모든 공시정보 이용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며,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칙	2.6 기업은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1.4 (좌동)
		주석	기업의 정보공시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도 포함한다. 예측재무정보는 최소한 향후 3년간의 예측치로 구성한다.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측정보라는 사실, 예측정보의 가정 또는 판단근거 및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은 예측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시하고 불리한 사항은 공시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사항과 같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과 연구개발성과와 같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원칙	2.7 기업은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u>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u>	1.5 기업은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u>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주석	산업의 다각화·첨단화·전문화로 기업정보가 전문용어로만 공시될 경우 정보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정보는 가급적	산업의 다각화·첨단화·전문화로 기업정보가 전문용어로만 공시될 경우 정보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정보는 가급적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해설을 병기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도 지양되어야 한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해설을 병기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도 지양되어야 한다.
			기업은 영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수시공시사항 및 기업설명회 자료를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b>무료로</b> 이용할 수 있도록 <b>한다</b>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b>감사, 보상, 추천위원회</b> )의 운영규정 및 기업윤리규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b>게재한다</b> . <del>상장, 등록기업의 경우 기업공시 자료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del>	기업은 영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수시공시사항 및 기업설명회 자료를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b>쉽게</b> 이용할 수 있도록 <b>하여야 한다</b>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b>감사보상추천위원회</b> )의 운영규정 및 기업윤리규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b>게재할 것을 권고한다</b> .
		원칙	28 <b>다수의 외국인이 기업의 지배에 참가할 정도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b>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은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b>외국인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b>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을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석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수 및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b>기업의 공시도</b> 외국인 주주를 감안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문공시의 필요성이 <b>질증하고 있다</b> .  <del>공개기업이라면</del> 공시에 있어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만이라도 <b>영문공시를 권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b>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숫자 및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를 감안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문공시의 필요성이 <b>크다</b> .  공시에 있어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만이라도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원칙	2.9 기업은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7 (좌동)
		주석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u>전문성 향상을 위하여</u>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에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정보 발생시 <u>이들에게</u> 즉시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u>구축</u> 하여야 한다.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u>전문성 향상을 위하여</u>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u>하여야</u> 한다.  그리고 기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에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u>공시가 필요한</u> 정보 발생시 <u>공시책임자에게</u> 즉시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u>마련</u> 하여야 한다.
		원칙	2.10 기업은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8 (좌동)
		주석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자이므로 그 지배주주에 관해서는 그 지분현황 및 변동상황과 기업에서의 지위, 기업과의 거래관계 등이 상세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좌동)
		원칙	2.11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9 (좌동)
		주석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사항이 정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를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검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좌동)
		원칙	2.12 기업은 기업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10 (좌동)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p>기업은 고유의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해에 반하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 회사를 통한 개인대출)를 금한다.</li> <li>· 임직원은 <b>기업의</b> 자산을 남용하지 않으며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li> <li>· 기업 또는 고객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li> <li>·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한다.</li> <li>·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자에게 보고한다.</li> </ul>	<p>기업은 고유의 윤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해에 반하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 회사를 통한 개인대출)를 금한다.</li> <li>· 임직원은 <b>회사의</b> 자산을 남용하지 않으며 합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li> <li>· 기업 또는 고객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li> <li>·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한다.</li> <li>·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담당자에게 보고한다.</li> </ul>
2. 기업 경영권 시장		원칙	1.1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1 (좌동)
		주식	기업의 합병 등은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공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좌동)
		원칙	1.2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2.2 (좌동)
		주식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b>회사의</b>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진과 주주 또는 경영진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적대적 기업인수를 <b>방어할 수 있으나</b> 이 때에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b>회사의</b> 재산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b>자기주식 등 기업의</b>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진과 주주 또는 경영진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적대적 기업인수를 <b>방어하거나 주주에게 이로운 방향인 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에 대한 수용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b> 이 때에도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자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p>경영권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목적은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주식의 취득 이유를 이해하고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가격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p>	<p>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u>기업의</u> 재산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p>
		원칙	<p>1.3 기업은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3 (좌동)</p>
		주식	<p>기업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익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정한 <u>가격에</u> 의한 주식매수청구제도가 중요하다.</p> <p>주식매수가격은 기업과 반대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개기업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가 기업인수에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기업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익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u>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u> 공정한 <u>가액에</u> 의한 주식매수청구제도가 중요하다.</p> <p>주식매수가격은 기업과 반대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개기업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가 기업인수에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공개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3. 기관 투자자	원칙	<p>(신규)</p>	<p><u>3.1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u></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신규)	<p><u>기관투자자의 적절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첫째, 주주권 행사에 관한 적절한 내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일정한 행동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투자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행동방향 설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책 및 의결권 행사 등 활동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p> <p><u>둘째, 신탁재산 보호를 위해 신의성실 원칙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는 각기 다른 소유와 지배구조, 고객 및 기업과의 다양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목적에 따라 주주간에 유인이 다르기 때문이다.</u></p> <p><u>셋째, 기관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감시와 주주제안 등 주주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여야 한다.</u></p> <p><u>넷째, 적절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특정 의안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u></p>
		원칙	(신규)	<p><u>3.2 기관투자자는 기업과의 거래 등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악용하거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u></p>

대항목	중항목	구분	소항목	
			현행	개정안
		주식	(신규)	기관투자자는 다른 주주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해 경영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우호주주 확보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에 비해 보다 강화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칙	(신규)	3.3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자산 운용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의 내용과 주주권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	(신규)	기관투자자를 계열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 기업집단 또는 개인이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주주 및 수익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의 내용과 주주권 행사 내용이 자세히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	(신규)	3.4 기관투자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주식	(신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주권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내부조직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원칙	(신규)	3.5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관투자자는 자신의 지배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식	(신규)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